

# 모바일광고플랫폼 인증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11. 10. 7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모바일광고플랫폼 인증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모바일광고플랫폼(Mobile Advertising Platform, 이하 “플랫폼”이라 한다)이란 모바일 단말기에 특화되어 광고전송부터 데이터 및 효과 분석, 집행 경과 또는 결과 보고 등을 수행하는 솔루션을 말한다.
- ②인증이란 모바일광고플랫폼의 안정성, 투명성,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.
- ③신청인이란 위원회에 모바일광고플랫폼의 인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.
- ④기술평가실사란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광고를 집행하는 플랫폼에 대해 관련법 준수, 장비 또는 체계 운용의 기술적 적합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말한다.

**제3조(공정한 직무수행)**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 또는 지원하는 자는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4조(적용범위)**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정관,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2장 위원회

**제5조(위원회 구성)** ①위원회는 모바일광고 관련 산·학·연 등 전문가로 구성한다.

- ②위원은 모바일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또는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국온라인광고협회장이 위촉한다.
-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, 2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.
- ⑤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**제6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이 궐위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 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위원장은 회의소집, 회의연장, 회의안건 부의, 기술평가실사팀 설치 등의 권한을 가진다.

**제7조(위원회 업무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플랫폼 인증
2. 플랫폼 인증 취소, 재심사
3. 플랫폼 인증기준
4. 위원회의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
5.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
6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8조(회의소집 및 의결)**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
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.

④제1항에 따른 회의소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소집 1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(전자서면을 포함한다)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⑥제5항에 따른 서면결의는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.

**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인증심사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인증심사의 신청인이 되거나 해당 인증심사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
2. 위원이 해당 인증심사의 신청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인증심사 시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

②신청인은 위원에게 인증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피의 결정을 한다.

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인증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## 제3장 사무국 및 기술평가실사팀

**제10조(사무국 설치)**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한다.

**제11조(사무국 업무)**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.

1. 위원회 행정업무 지원
2. 이용자 피해 및 고충, 불만 등 신고 접수 및 처리
3. 플랫폼 인증제도 및 인증취득대상 홍보
4. 플랫폼 인증제도 조사 및 연구
5. 행정기관·공공기관·기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6. 기타 위원회의 활동 및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

**제12조(기술평가실사팀 구성 및 운영)** ①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술평가실사팀(이하 “실사팀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실사팀장은 실사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인증절차

**제13조(신청)** ①플랫폼 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<별지 제1호 서식>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(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)
2.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,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이 가능한 통신수단
3. 신청의 취지, 이유 및 내용

③위원회는 세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비를 받을 수 있다.

**제14조(신청의 보완)**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보완할 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.

**제15조(신청의 변경)** ①신청인은 위원회에 제16조에 따른 인증심사회의 개최 전까지 우편, 전자우편, 전화, 팩스,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변경이 당해 절차를 현저하게 지체시킬 우려가 있거나

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16조(인증심사회의의 개최 등)** ①위원장은 인증심사회의의 개최 10일 이전에 회의 일시 및 장소,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해 기술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위원회는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신청내용에 대해 제7조제3호에 따른 플랫폼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심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결하여야 한다.

1. 적 합 :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
2. 부적합 :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**제17조(인증심사회의의 연장 등)** ①위원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요구 또는 직권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인증심사회의를 연장 또는 속행할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회의가 연장 등을 할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결과통보)** ①위원회는 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해당 신청내용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합으로 의결된 경우 지체 없이 <별지 제2호 서식>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변경사항에 대한 인증신청)** ①제1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변경사항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.

**제20조(재심사)** ①신청인은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재심사 관련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.

**제21조(인증기간 및 인증연장)** ①인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②신청인은 기간만료 전 30일 이내에 인증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인증연장 관련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.

**제22조(인증의 취소등)** ①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결과통보 직후부터 인증기간 내에 인증기준의 위반사항 발생시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청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경고 : 개선명령이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- 2. 재경고 : 경고 후 7일 이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인증취소 : 경고 3회 조치 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**제23조(개선명령에 대한 이의제기)** ① 제22조에 의한 개선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고 이의제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제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24조(회의의 비공개)**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인증심사회의 또는 제20조에 따른 재심사를 공개하지 아니한다.

## 제5장 보 칙

**제25조(비밀보호)** 위원회의 인증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26조(위임사항)** 이 규정에 정하여진 사항 이외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27조(수당 등)**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 <2011. 10. 7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모바일광고플랫폼 인증위원회 운영세칙

제정 2011. 10. 7

**제1조(목적)** 이 세칙은 모바일광고플랫폼 인증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운영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과 경미한 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원회 구성)**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3조(회의소집 및 의결)** 위원장은 회의소집 시 회의목적, 주요안건,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소집 1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기술평가실사팀 구성 및 운영)** ①실사팀은 3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.

②실사팀원은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 기술평가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인증위원 및 관련기관·단체에서 추천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③실사팀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서류 심사 및 실사를 시행하고, 그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신청의 보완)** 위원회는 신청관련 자료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, 보완을 요청한 기간은 제18조에 따른 결과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**제6조(결과통보)** 결과통보는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결과만을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.

**제7조(변경사항에 대한 인증신청)** ①변경사항에 대한 인증의 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 내로 한다.

②변경사항에 대한 인증절차는 제13조 내지 제18조의 절차를 준용한다.

**제8조(재심사)** ①재심사는 1회로 제한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는 규정 제13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.

- 제9조(인증기간 및 인증연장)** ①신청인은 인증연장을 요청한 경우 <별지 제3호 서식>의 인증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간 만료 전 3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신청자는 제1항에 의한 인증연장 신청서 제출 시 직전 인증심사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위원회는 인증연장 요청 시 신청인이 신고한 변경사항을 심사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안에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신고사항 이외의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.